

건축공사 기성고 허위서류 근거, 확인 없이 기성고대출 승인, 집행한 금융기관 직원의 업

무상 배임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8. 선고 2021노334 판결



(1) 건축공사 기성고 대출의 전체적인 승인 및 실행,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기성고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진행 - 업무상 배임

(2)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 (3)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 (4)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첨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8. 선고 2021노334 판결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